

포항시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공고 (공개경쟁)

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에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참신하고 패기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
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인원 : 6명

직종 및 직급	채용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
	계	6명	
일반직 5급 (팀장급)	청소년활동	1명	○ 청소년 정책 개발 및 기획, 사업 운영
일반직 7급	청소년활동	2명	○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	일반 행정	2명	○ 일반행정 업무 (경영·예산·회계·정책·기획·평가)
	기술(기계)	1명	○ 시설물 관리(기계안전관리 등), 기타 사무

※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2. 응시자격

□ 응시자격기준[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8조(채용제한연령 및 자격기준)]

채용분야	자격 및 경력기준
공 통 (필수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○ 연령제한 : 기준일 현재 만 18세 이상 - 정년 (만 60세)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 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○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(아래 자격증 中 한 개 이상) - 컴퓨터활용능력(1~2급), 워드프로세서, MOS, ITQ

일반직 5급	청소년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(지도)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○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※ 위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일반직 7급	청소년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(지도)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○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※ 위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	일반 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○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전문가 ○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○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(아래 자격증 中 한 개 이상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5px 0;"> -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산회계(1~2급), 세무회계(1~2급), 기업회계(1~2급), 회계관리(1~2급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위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	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○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전문가 ○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○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(아래 자격증 中 한 개 이상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5px 0;"> - 기계정비산업기사, 승강기산업기사, 일반기계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위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
※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※ 기준일 :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

※ 경력은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직접 수행한 경우이며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.

※ 청소년(지도) 관련 : 청소년(지도)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아동(복지)학, 심리학에 한함

※ 청소년 관련 분야 :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를 말함. < **첨부 : 청소년 관련 분야 참고** >

□ 채용결격 사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해당하는 자
- 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9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9조

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
3. 보수 및 임용방식

직종 및 직급	보 수	임용방식
일반직 5급	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(공무원 7급 상당)	수습기간 1년 후 정규임용 ※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 해당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일반직 7급	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(공무원 9급 상당)	

4. 채용 방법 및 절차

구 분		내 용
1차	필기전형	○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 에서 선발
2차	서류적격심사	○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
3차	면접전형	○ 해당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필요한 능력 심사
4차	임용후보등록	○ 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- 신체검사, 신원조회, 임용후보등록 등 ※ 신체검사,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시 불합격 처리됨
임 용		○ 신입 임용 : 수습(1년) → 정규임용

※ 상기 전형 절차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5. 전형별 세부 기준

□ 1차 (필기전형)

○ 필기시험 과목

구 분		시험과목	총점
공 통		○ 일반상식 25문항 (한국사 9문항, 국어 8문항, 시사상식 8문항)	총 200점 공통(25문항) 100점 전공(25문항) 100점 ※ 문항당 배점 4점
일반직 5급	청소년 활동	○ 전공과목 25문항 (지도사 9문항, 상담사 8문항, 복지사 8문항)	
일반직 7급	청소년 활동	○ 전공과목 25문항 (지도사 9문항, 상담사 8문항, 복지사 8문항)	
	일반 행정	○ 전공과목(행정학총론) 25문항	
	기술 (기계)	○ 전공과목(기계일반) 25문항	

○ 필기전형 합격 기준

- 시험 성적이 각 과목 40% 이상이고, 전체 총점의 60%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1차 필기 합격자 결정

※ 단, 지원자가 필기시험 합격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과락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.

□ 2차 (서류적격심사)

○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

- 불합격 기준

- 응시자격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
- 제출내용이 허위이거나 증빙서류와 불일치 하였을 경우

□ 3차 (면접전형)

○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필요한 능력에 대한 심사

○ 면접기준

평정요소	배 점			평점기준
	상	중	하	
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	6	4	2	※ 합 격 - 평점의 평균 20점 이상 ※ 불합격 - 평점의 평균 20점 미만 -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 요소에 '하'로 평점
전문지식과 응용능력	6	4	2	
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6	4	2	
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	6	4	2	
창의력 ·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	6	4	2	

□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

- 1차 필기전형 평균(100점)의 70% 적용 후 면접점수(30점)와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

※ 시험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경우, 다음 순위에 의해 합격자 결정

- 1. 시험성적 우수자 2.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

※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

□ 최종합격자 결정

- 시험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 후 결격사유 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, 최종 합격 통보
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

6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□ 전형별 응시지원 방법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구 분	내 용
응시 지원자	○ 응시지원 시 입력 항목별 해당 사항 입력 - 응시지원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자기소개서, 경험 및 경력기술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-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, 가산특전관련 대상자(해당자에 한함)
면접전형 대상자	○ 필기전형을 합격한 면접전형 대상자 는 응시지원서 입력 사항 증빙자료(스캔본 파일) 업로드 - 증빙자료 업로드 : 가산특전관련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자격증명서 등 - 업로드 및 제출 기간 : 2. 15.(화) ~ 2. 16.(수) 18:00까지 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

□ 지원 시 유의사항

응시지원 시 유의사항
<p>「직무능력 중심(블라인드) 채용」 시행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 상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하며, 기관명, 학교명 등은 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. 원본 증빙서류는 면접심사 당일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제출합니다.</p> <p>따라서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 전일(기준일) ‘1개월 이내 발행분’으로 제출 2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3. 자기소개서, 경험 및 경력기술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기관명, 출신지역, 학력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도록 주의 4. 경험 및 경력기술서는 근무기간, 근무부서, 직위(책),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(기관명 기재 금지)

□ 시험일정 (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 공고	2022. 1. 26.(수) ~ 2. 7.(월)	- 포항시청·청소년재단 채용 홈페이지 -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시스템 등
응시원서 접수 (시험장소 별도 공지)	2022. 1. 27.(목) 09:00 ~ 2022. 2. 7.(월) 18:00 까지 ※ 시험장소 공지 : 2022. 2. 9.(수)	- 인터넷 접수 (접수마감 : 2. 7.(월) 18시까지) - 시험장소 : 재단 채용 홈페이지 공지
필기전형 및 발표	시험 : 2022. 2. 13.(일) 11:00 발표 : 2022. 2. 15.(화)	
증빙자료 업로드	2022. 2. 15.(화) ~ 2. 16.(수) 18:00 까지	- 필기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업로드 ※ 해당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,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(면접응시 불가)
서류적격심사 및 발표	심사 : 2022. 2. 17.(목) 발표 : 2022. 2. 18.(금)	- 서류적격 결과 발표 - 면접일정 및 장소 안내
면접전형	2022. 2. 22.(화) 15:00	
합격자 결격사유 조회	2022. 2. 24.(목) ~ 2. 28.(월)	-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
최종합격자 발표	2022. 3. 2.(수) 예정	- 포항시청·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
임용	2022. 3. 3.(목) 이후 예정	- 재단 사정에 따라 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- 전형별 합격자 발표 등은 포항시청·청소년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
개인별 확인 바랍니다.
-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재단 사정에 따라
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포항시청·청소년재단 채용 홈페이지 또는
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.

7. 가산특전

□ 대상자 및 가점점수

구 분	관련법령 및 규정	가 점	비 고
취업보호 (지원) 대상자	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다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마.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바.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	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가산	

□ 가산특전 유의사항

○ 공통사항

- 가점점수에 대한 증명서를 입력 및 제출한 경우 각 과목별 상기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

※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(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)

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.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

○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

-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-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○ 의사상자 등

-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-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8. 기타 유의사항

□ 응시 지원 시
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채용예정인원 2배수의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분야에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지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채용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작성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사지원 마감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와 같은 사유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(입원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)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,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채용 제출서류 반환 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)

-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.

※ 단, 응시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

□ 임용관련
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재단 인력수급 여건상 채용이 불필요한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
-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(인사청탁 등)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,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, 채용시 자격제한,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.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라도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 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.
※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.
-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.

□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방법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관련 : 포항시청소년재단 인사담당자 (☎ 054-240-9110)

【첨 부】 < 청소년 관련 분야 참고 >

청소년 기본법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5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(중략)

6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8. “청소년단체”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청소년단체의 정의

[시행 2005. 4. 8.] [여성가족부고시, 2005. 4. 8., 제정]

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“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”로 본다.

-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
- ②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③ 청소년학과·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(학교법인을 포함한다)

청소년활동 진흥법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6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[전문개정 2014. 1. 21.]